



제주보육원

정규직 생활지도원 공개채용

모집기간 24. 7. 4.(목) ~ 7. 21.(일)

⇒ 모집부문

정규직 생활지도원

- 채용인원 : 0명
- 주요업무
 - 아동 생활지도(학습, 학교생활, 프로그램 진행/인솔 등)
 - 보육일지 및 프로그램 계획서 / 보고서 작성
 - 시설물 관리
 -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업무
- 급 여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적용(4대보험 포함)
- 근무시작일 : 2024. 8.

⇒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는자
- 아동복지법 제54조의2(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 중 1개의 자격증 소지자
- 상주 근무 가능자(*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근무형태 변경될 수 있음)
- 운전가능자
- 만60세 미만인자(*시설 정년 만60세)

⇒ 전형일정

24. 7. 4. ~ 7. 21.

24. 7. 5. ~ 7. 22.

24. 7. 24.

채 용

응시원서접수
(18시까지)

1. 면접전형
2. 인성검사

합 격
(홈페이지 공지)

1. 건강검진
2. 범죄경력조회 등

수습기간
(3개월)

1. 입사결정
2. 채용계약

- ◆ 상기 일정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하여 일정 조정 후 수시 면접 실시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인성검사를 실시함
- ◆ 일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통보함
- ◆ 인성검사, 건강진단서, 범죄경력 조회 후 이상 없을시 임용(채용계약) 진행됨
- ◆ 서류전형점수와 면접시험 점수 합산결과 고득점자 순 결정 (동점자 발생시 '면접시험' 고득점자 합격)

⇒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1. 제출서류

- 자사양식 이력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붙임1 서식) 1부

2. 지원방법

- 이메일 접수 (jeju887@hanmail.net)
 -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 메일 열람 후 '서류 접수 완료' 메일 발송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하여 일정 조정 후 접수기간 내에 수시 면접 실시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
 - ◆ 서류전형점수와 면접시험 점수 합산결과 고득점자 순 결정 (동점자 발생시 '면접시험' 고득점자 합격)
 - ◆ 인성검사·건강진단서·범죄경력 조회 후 이상 없을시 임용(채용계약) 진행됨
 - ◆ 자격증, 경력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은 최종 합격 후 제출
 - ◆ 일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통보함

⇒ 기 타

1. 응시원서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2.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3. 합격자 통지 후 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채용이 취소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채용취소 및 급여 반납 등)
4. 채용예정자의 경우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건강진단서 등의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5.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합격취소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이 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또는 재공고를 실시 할 수 있음

6.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으며 재공고를 통해 모집함

7.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8.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파기(삭제)함(채용 확정 후 15일 이내)

9.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제주보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함

10. 기타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4-743-5020)

11. 관련 법령 정보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2021. 12. 21.>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1. 12. 21.>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 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2016. 3. 22., 2016. 5. 29., 2017. 9. 19., 2017. 10. 24., 2018. 12. 11., 2019. 1. 15., 2020. 4. 7., 2020. 12. 29., 2021. 12. 21.>

- 직무내용 및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제주보육원 인사담당자 (☎ 064-743-5020)